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4. 12 선고 2022가합2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4. 12.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335,301,184원의 한도 내에서,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분양권에 관하여 2018. 3.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75,46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10,761,1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재판장 판사 강종선, 판사 권슬기, 판사 임세준

별지